

	ESG 구매 정책 (협력사 행동규범 및 가이드라인)	문서번호	-
		제정일자	2024.05.14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ESG 구매 정책

(협력사 행동규범 및 가이드라인)

REV NO	개정 일자	개정 내용	비 고
0	2024.05.14	관리문서 제정	

세코닉스 협력사 행동규범은 거래기본계약서 20조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세코닉스의 협력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협력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협력사의 경영 활동에 행동규범을 내재화하고 실질적인 공급망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코닉스의 협력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도 협력사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노동 인권

협력사는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임시/이주/단기계약 근로자, 실습생,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아동 근로 금지

- 1) 아동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사는 즉시 그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을 의미합니다.)
- 2)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안전 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3)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실습생에게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4)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공급망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강제 노동 금지

- 1) 근로자의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2) 협력사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부채를 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하위 협력사들로 하여금 동일한 약속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관련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임직원 및 협력사(하위 외부 공급자)들에게 행동강령 및 강제 노동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5) 협력사(하위 외부공급자)가 판매제품(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 제품에 포함된 제품 포

함)의 생산에 강제 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공급망의 사용 중단과 함께 시정 계획을 진행시키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조치결과를 세코닉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로 시간 준수

- 1)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2)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 1)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 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임금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2)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언어 등) 를 제공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 1)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할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 2) 근로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징계를 사용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 3)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과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이행하며,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6) 차별, 괴롭힘 금지

- 1)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출신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 2)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3)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 및 신체 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4)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업무 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적 관습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사는 이를 허용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채용 혹은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방법을 사용하여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쉽게 접근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 6)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보장

- 1) 협력사는 현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 교섭권,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 2)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보건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건강과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기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 안전 진단 및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1)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 (예 :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낙상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협력사는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규정 마련 및 안전 작업 조치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2) 위해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에 관한 교육 자료와 작업 시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 3)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 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기계/전기/화학/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에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

1)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1) 비상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2) 근로자에 대한 공지 및 대피 절차 마련, (3)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 훈련, (4) 탈출 시설, 유도등, 화재 감지/경보 및 소방 시설 작동 점검 주기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3)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자체 계획과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위험 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1)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장비, 안전장치, 방호벽,

3) 긴급장치 등을 제공/설치하고 주기적인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및 질병

1)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직업병 등 질병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제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산업 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 장려,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의학적 치료 제공, 재해 및 질병 발생시 시정조치 이행, 업무 복귀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산업 위생

1)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위해 요소를 제거 및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 3)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4)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해 요소와 연관된 교육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보건 관리

- 1)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조명,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 사물함,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3)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환경

협력사는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공정에 있어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예 :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등)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며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 1)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전력과 연료 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 자원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대체 자재 사용, 자재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 수자원 관리

- 1)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 및 방출 기록을 측정 및 감시해야 하고 보존 방법을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 2)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법적 기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3)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에 처리되어야 하며, 폐수 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4) 화학물질 관리

- 1) 협력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 물질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를 위해 식별 표기, 라벨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5) 대기오염 물질 관리

- 1)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연무제, 부식성 가스, 미세먼지, 오존 파괴물질 및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3) 대기 배출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기후 변화 대응

- 1) 협력사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 간접배출)를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2) 국제 사회의 기후 관련 협약에 부합하는 목표에 맞춰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 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3)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써야 하며, 재생 에너지원(태양광 패널등)을 조달하거나 구축하는 경우,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4)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외부공급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회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환경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7) 폐기물 관리

- 1)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시 환경 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유해하지 않은 고품질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 저장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물질 재활용 및 폐기시 정보를 표시하고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특정 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생물 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 1)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윤리 및 공정거래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코닉스와 협력해야 합니다.

(1) 투명성, 청렴성

- 1) 협력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획득 및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3) 협력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고발 근로자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협력사의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하며, 사업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5) 협력사의 노무, 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며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 6)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합니다.

(2) 부정방지 의무의 준수

- 1) 협력사는 세코닉스의 '기본거래계약서 19조 부정방지의 의무'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약관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정보, 지식재산 보호

- 1) 협력사는 지식재산권은 존중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본거래계약서 14조”에 의거 세코닉스와 거래에서 알게 된 세코닉스의 모든 정보(기술자료, 정보, 지식재산 등)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사전 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세코닉스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업무상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4)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1) 협력사는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담합금지, 부적절한 정보 획득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거래계약상 정해진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대금의 임의 조정 감액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1) 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3)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세코닉스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6) 위조부품 방지

- 1)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2)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3)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 목적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책임광물 관리

- 1)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제품에 포함된 코발트,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기타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3)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기타는 알루미늄/보크사이트, 크롬, 구리, 면, 유리(규사), 그래파이트(천연), 가죽, 리튬, 마그네슘, 망간, 운모, 몰리브덴, 니켈, 니오븀, 팔라듐, 플래티넘, 폴리실리콘, 희토류 원소, 로듐, 천연고무, 강철/철, 아연 등을 포함

5.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 1)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해야 하고,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신년사 포함), 내부지침 등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 2)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고위 경영진 혹은 대표를 명시해야 하며 대표자는 경영 시스템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담당자 선임, 교육 및 소통

- 1) 지속 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하고, 지속 가능 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2)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임직원과 협력사 및 고객에게 정책, 관행, 기대 사항 및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법규 및 위험 관리

1)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며,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2)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리스크 점검

1)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 등 계약상 세코닉스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 고충 처리

1)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해야 합니다

(6) 공급망 참여 및 책임

1)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협력사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1) 동반성장

1) 국내외 상생협력 관련 법안 및 규정을 준수하여 외부공급자와 공동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추구합니다.

2)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협력사와 거

래하는 2차, 3차 협력사까지 공정거래 이행과 동반성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사회공헌

- 1) 지역 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고용창출을 지속 노력하고, 지역 사회의 법규를 준수하는 등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품질경영

협력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세코닉스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품질관리

- 1) 협력사는 세코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 2)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내부 품질 관리 절차, 프로세스 및 요건을 준수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4) 품질 검사 결과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며 결과를 위조, 변경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하며, 제품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고지합니다.
- 5)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변경관리

- 1) 협력사는 설비, 재료, 작업방법의 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시 세코닉스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불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3) 협력사 상호간 품질관리

- 1) 협력사는 자신과 거래 중인 다른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품질지원을 통해 당해 협력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확보에 이바지합니다.
- 2) 고객사 및 이해 관계자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품질 향상에 반영합니다.

세코닉스 ESG 행동규범 준수동의서

(주) 세코닉스 대표이사 귀중

당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세코닉스 ESG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세코닉스와의 계약 및 협력관계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며, 적극 동참 및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와 세코닉스 사이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세코닉스가 당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설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에 협조하며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세코닉스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당사가 계약한 협력회사에도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동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협 력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서명 또는 인)